Policy and Law Report _Vol.28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3. 23. ~ 3. 27.)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2020. 3. 23. 규제혁신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의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범정부 혁신과제 7개 선정(미래 모빌리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경제, 산업단지 등)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② 단독과제 7개(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 선정 및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실시, ③ 공공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 운영 등이 있음

[참고자료]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부2]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 완화 발표

2020. 3. 24.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2→1㎡), ②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100kg), ③ 2021년 차종 신설 추진(자동차 분류체계상 특수차에 초소형 신설 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고용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및 재택 유연근무 지원 제도 발표

2020. 3. 23.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 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③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 배포

[기재부1]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2020. 3. 2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존 대출 보증 프로그램 활용 및 신규 대출 2.2조원, 보증 지원 2.5조원 등 4.7조원 추가 공급, ② 2개 신규 프로그램 도입하여 대상기업에(대기업 포함) 4조원 공급, ③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참고자료] 별첨_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기재부2]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발표

2020. 3. 2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년 징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및 '21년 징수 부담금 감면, ② 외화 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단, 금융위 의결 필요), ③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 등이 있음

[참고자료]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첨_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 추진

2020. 3. 25. 올해 총 53억 5천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된 모든 지원사업 전액 무료 제공, ② 장외영향평가서(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컨설팅 제공, ③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 형태에 따른 법령 이행사항 등에 대한 현장교육 진행 등이 있음

[참고자료]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산자부] 소재 부품 장비사업 특별조치법 국무회의 의결

2020. 3. 24. 소재 부품 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기존 소재 부품 외에 장비 분야 신설 및 소재 부품 장비 대상 업종 통합 규정, ②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운영, ③ 특화단지 지정요건 절차 및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음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금융위] 회생 중소기업에의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발표

2020. 3. 25.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발표함(시행: 4. 1.부터). 주요 내용으로 ① 회생금융 350억원 및 이행보증 250억원 규모의 지원, ② 중진공 캠코 10억원~20억원 한도, 서울보증은 보증 5억원 한도, ③ 융자 기관별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금융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20. 3. 24.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58.3조원), ②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4.1조원), ③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 증권시장안정펀드 10.7조원 조성, ④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 강구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참고자료] 별첨_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 3. 26. 대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반영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기한: 2020. 5. 6.) 주요 내용으로 ①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사용 비율 100% 2점 → 80% 이상 2점, 50% 이상 80% 미만 1점 등), ③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상향 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법령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자료]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자료]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의 신청 및 허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02-316-4630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02-316-4432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02-316-4487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02-316-1773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02-316-2573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02-316-1777
jysung@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